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헌혈인구 감소로 걱정된 혈액보유량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나.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u> <u>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u>
<p>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생략)</p>	<p>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신 설></u></p>	<p><u>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u></p>
<p>제11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생략)</p> <p>② <u>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6</u></p>	<p>제11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7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중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2021.6.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9.5.28>